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19. 12. 19(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안 건 : 총 31건

- 심의 25건(강릉 경포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등)
- 검토 4건(창녕 인양사 조성비 주변정비사업 설계 검토 등)
- 보고 2건(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등)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강릉 경포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김천 방초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3	봉화 한수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4	청송 찬경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5	안동 청원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6	안동 체화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7	경주 귀래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8	달성 하목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9	영암 영보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0	진안 수선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1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재심의)	
12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공동주택(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재심의)	
13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주변 소하천 정비공사	
14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 인도교 설치공사(2차)	
15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주변 명상힐링센터 건립(재심의)	
16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주변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	
17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강당 건립공사	
18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선원 신축공사	
19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 원융당 개축	

20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주변 템플스테이 건물 건립	
21	안동 봉정사 대웅전 주변 영산암 진입로 정비공사	
22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대응보전 건립(3차)	
23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교량 설치	
24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보호구역 추가 지정	
2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	
【검토사항】		
26	창녕 인양사 조성비 주변정비사업 설계 검토	
27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건립 검토(2차 재검토)	
28	여주 신륵사 설법당 건립 검토(변경 4차)	
29	공주 마곡사 대응보전 주변 금어원 건립 검토	
【보고사항】		
30	창경궁 명정문 보수공사 추진계획 보고	
31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농막 설치(변경허가) -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주변 축사 양성화 및 증축(776-1번지 외) -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주변 축사 양성화 및 증축(993-1번지) -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주변 축사 양성화 및 증축(994번지) - 여수 진남관 입구 무인계측기 설치 - 구미 대둔사 대웅전 주변 도로 선형 개량 공사 -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기간연장) - 경주 서악동 귀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경주 석굴암 삼층석탑 주변 통신용 중계기 강관주 설치 -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주변 임도개설, 숲가꾸기 등 -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2019 관광자원화사업(피아골 탐방로 정비) -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주변 상수도관 매설공사 	

-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설치 및 부지 조성(변경허가)
-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 주변 금선암 요사채 건립(변경허가 2차)
- 부산 범어사 조계문 주변 비림정비사업(국고보조 검토사항 변경)
-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농막 설치
-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주변 기존 계단 철거 후 데크 설치
- 충주 역정사지 대지국사탑비 주변 단독주택 및 부속동(창고) 신축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13-001

1. 강릉 경포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강릉 경포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 강릉시 소재 「강릉 경포대」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9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19.11.0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9.11.14~'19.12.13)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강원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 「강릉 경포대」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경포로 365(저동 94번지)
 - 지정일 : 1971. 12. 1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강릉 경포대(江陵 鏡浦臺)
 - 소유자(관리자) : 강릉시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경포로 365(저동 94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1326년 건립, 1571년 복원, 1628년, 1897년 중수)
 - 지정면적 : 125.63㎡
 - 양식 : 정면5칸·측면5칸, 이익공계 7량가 팔작지붕

2. 김천 방초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 방초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김천시 소재 「방초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9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19.11.0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9.11.14~'19.12.13)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경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6호 「방초정」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83 번지
 - 지정일 : 1974. 12. 10.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김천 방초정(金泉 芳草亭)
 - 소유자(관리자) : 연안이씨 종중(○○○)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83 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25 건립, 1788 중건)
 - 지정면적 : 43.96㎡
 - 양 식 : 정면 3칸, 측면 2칸, 5량가 이익공계 겹처마 팔작지붕

3. 봉화 한수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봉화 한수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봉화군 소재 「봉화한수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9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19.11.0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9.11.14~'19.12.13)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경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7호 「봉화한수정」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34 번지
 - 지정일 : 1982. 02. 24.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봉화 한수정(奉化 寒水亭)
 - 소유자(관리자) : 안동권씨 충정공파(○○○)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34 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08년 건립, 1742년 중창, 1848년 중수, 1880년 중수)
 - 지정면적 : 102.23㎡
 - 양 식 : 정면3칸·측면1.5칸(맞배지붕)+정면3칸·2칸(팔작지붕), 5량가

4. 청송 찬경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청송 찬경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청송군 소재 「찬경루」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9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19.11.0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9.11.14~'19.12.13)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경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83호 「찬경루」
 - 소재지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69 번지
 - 지정일 : 1984. 12. 29.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청송 찬경루(靑松 讚慶樓)
 - 소유자(관리자) : 청송심씨 종중
 - 소재지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69 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93년 중건, 1927년 중수)
 - 지정면적 : 114.95㎡
 - 양 식 : 정면4칸·측면4칸, 5량가 이익공계 팔작지붕

5. 안동 청원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청원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안동시 소재 「청원루」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9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19.11.0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9.11.14~'19.12.13)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경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9호 「청원루」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87 번지
 - 지정일 : 1985. 10. 1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안동 청원루(安東 淸遠樓)
 - 소유자(관리자) : 안동김씨 양소당 종중(○○○)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87 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18년 중창)
 - 지정면적 : 110.74㎡
 - 양 식 : 정면5칸·측면2칸·좌우 날개 2칸, 5량가, 팔작지붕

6. 안동 체화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체화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안동시 소재 「체화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9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19.11.0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9.11.14~'19.12.13)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경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0호 「체화정」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23-10(상리2리)
 - 지정일 : 1985. 10. 1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안동 체화정(安東 棣華亭)
 - 소유자(관리자) : 예안이씨 체화정 문중(○○○)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23-10(상리2리)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61년 건립)
 - 지정면적 : 57.6㎡
 - 양 식 : 정면3칸·측면2칸, 3량가 팔작지붕

7. 경주 귀래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 귀래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귀래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9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19.11.0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9.11.14~'19.12.13)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경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4호 「경주귀래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천서길 7(다산리 1074)
 - 지정일 : 1991. 05. 14.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경주 귀래정(慶州 歸來亭)
 - 소유자(관리자) : 여주이씨 지헌공파 종중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천서길 7(다산리 1074)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55년 건립)
 - 지정면적 : 89.96㎡
 - 양 식 : 이익공계 5량가 팔작지붕, 육각형 정자

8. 달성 하목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대구 달성군 소재 「달성 하목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달성군 소재 「달성 하목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9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19.11.0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9.11.14~'19.12.13)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 (2) 대상문화재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6호 「달성 하목정」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목정길 56-10
 - 지정일 : 1995. 05. 12.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달성 하목정(達城 霞驚亭)
 - 소유자(관리자) : 전의이씨 종중(○○○)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목정길 56-10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04년 경)
 - 지정면적 : 77.76㎡
 - 양식 : 대청(정면3칸, 측면2칸), 방(정면1칸, 측면4칸) 丁자형 와가

9. 영암 영보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전남 영암군 소재 「영암 영보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영암군 소재 「영보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9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19.11.0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9.11.14~'19.12.13)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전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 기념물 제104호 「영보정」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정길 10-8(영보리 296)
 - 지정일 : 1987. 01 .15.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영암 영보정(靈巖 永保亭)
 - 소유자(관리자) : 전주최씨·거창신씨 종중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정길 10-8(영보리 296)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35년 경)
 - 지정면적 : 116.8㎡
 - 양 식 : 정면5칸·측면3칸, 익공계 5량가 팔작지붕

10. 진안 수선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전북 진안군 소재 「진안 수선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북 진안군 소재 「수선루」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9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2019.11.07)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9.11.14~'19.12.13)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전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6호 「수선루」
 - 소재지 : 전북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산57 번지
 - 지정일 : 1984. 04. 01.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진안 수선루(鎭安 睡仙樓)
 - 소유자(관리자) : 연안송씨 참봉공파 종중
 - 소재지 : 전북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산57 번지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86 건립, 1884년·1888년 중수)
 - 지정면적 : 16.63㎡
 - 양 식 : 정면3칸·측면3칸, 이익공 3량가 맞배지붕

11.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재심의)

가. 제안사항

대구 달성군 소재 보물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및 제4구역 “달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1.21.) : 보류
 - 석빙고 보존 상태를 감안한 발파 허용기준 적용 필요
 - 발파 대상 암석량, 발파 공법 등 구체화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달성 현풍 석빙고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현풍읍 상리1길 36
 - 지정일 : 1980. 09. 1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읍 상리 632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8m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 길이 : 267m(총 길이 680m), 폭 : 19m(기존 12m)

- 토공
 - 흙깎기 : 5,063m³
 - 흙쌓기 : 89m³
- 우수공
 - 측구(L형, 옹벽식 L형) : 655m
 - 종, 횡배수관 : 280m
- 포장공
 - 도로아스팔트포장 : 3,458m²
 - 보도블록포장 : 1,080m²
- 가옥철거 : 2동

※ 보완 사항

- 발파 시 진동 허용 기준 : 0.13cm/sec → 0.05cm/sec(무진동)
- 발파대상 암석량 : 현풍 석빙고 주변의 토공량은 추정암반선과 양단면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을 경우 리핑(연암굴착) 614.0m³, 발파암 1,652.0m³ 등 2,226m³ 임.
- 발파 공법 구체화 자료 : 설명자료 참고

12.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공동주택(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충남 청양군 소재 보물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공동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동주택(고령자 복지주택)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공통사항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1.21.) : 보류
 - 역사문화 경관을 고려하여 높이 축소 후 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 소재지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58(읍내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40m

○ 사업내용 : 공동주택(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구 분	1차 (‘19.11.21.)	금 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1,599.99㎡ (8,892,88㎡)	1,616.43㎡ (8,876.50㎡)	건축면적 16.44㎡ 증가 연면적 16.38㎡ 감소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동수	3개동	좌동	
층수	아파트 : 지하 1층, 지상 13~14층 부대복리 : 지하 1층, 지상 2층	아파트 : 지하 1층, 지상 13층 부대복리 : 지하 1층, 지상 2층	1개층 감소
최고높이	44.5m	41.7m	2.8m 감소

13.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주변 소하천 정비 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주변에 소하천 정비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소하천 정비 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및 제3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5m(1층),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1층)”, 제5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2층), 최고높이 경사지붕 12m(2층)”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139-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130-13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30m
 - 사업내용 : 소하천 정비 공사
 - 하천정비 : L= 500m, B=17m
 - 제방공 : 흙깎기 5,915㎡, 흙쌓기 2,003㎡
 - 호안공 : 옹벽블록(1000*330*500) 1,193㎡, 전석쌓기(600*700*850) 876㎡

- 구조물공 : 송리1교(B=5.0m, L=17.0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B=4.0m, L=400m)

14.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 인도교 설치공사(2차)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보물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에 인도교 설치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인도교 설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공통사항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1.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문화재가 많은 지역에 과도한 디자인과 규모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원촌길 8-14(서동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709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65m

○ 사업내용 : 인도교 설치

구 분	1차 (‘19.11.21. / 부결)	금 차	비 고
규모	B=3.4m(4.6m), L=70.0m, H=3.4m	좌동	B=난간폭(상관 구조물)
비너조형물	H=15.0m	H=4.0m	
구조	하로 아치교	좌동	
재료	상부-강재/ 기초-철근콘크리트, 강관말뚝	좌동	

15.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주변 명상힐링센터 건립(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남 장흥군 소재 보물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주변 명상 힐링센터 건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명상힐링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1.21)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번지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로 224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0m
 - 총사업비 : 8억(국비 5억6천, 군비 2억4천/문체부 국고보조사업)
 - 사업내용 : 명상힐링센터 건립
 - 대지면적 : 426.0㎡

- 건축(연)면적 : 92.97m²(123.35m²)
- 건물용도
 - 지상1층 : 명상공간, 로비 및 휴게실, 창고, 화장실
 - 지상2층 : 강당, 다용도실, 화장실, 방
- 건물층수/최고높이 : 2층/8.3m

16.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주변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보물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주변에 까치내재터널 개설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공통사항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군동면 까치내로 261-21(금곡사)
 - 지정일 : 1985.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 전남 강진군 작천면 삼당리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00m
 - 사업내용 :
 - 사업규모 : 총연장 3.3km, 폭 9.5m~11.0m(2차로)
 - 주요시설
 - 터널 : 1개소/940m, 교량 : 1개소/210m, 평면교차로 2개소 설치 등

※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내 사업

- 사업연장 : 755m(폭 9.5m/왕복 2차로, 터널 시점부 15m 포함), 금곡섬터 교차로 1개소

17.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강당 건립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 화성시 소재 보물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에 템플스테이 강당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용주사 템플스테이 강당 건립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 소재지 : 경기 화성시 용주로 136 (송산동, 용주사)
 - 지정일 : 2017. 08.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화성시 송산동 188-9번지 일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30m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강당 1동, 화장실 1동(별동) 건립
 - 건축(연)면적 : 템플스테이 강당 165.24㎡, 화장실 124.03㎡
 - 구조 : 템플스테이 강당 - 한식목구조, 화장실 - RC조
 - 층수/최고높이 : 템플스테이 강당(지상1층/9.14m), 화장실(지하1층/지하깊이 3.2m)
 - 기타 : 자연석 석축(H=1.2~2.0m, L=55m), 절토량 363.3㎡, 성토량 159.51㎡

18.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선원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 화성시 소재 보물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에 선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용주사 선원 신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 소재지 : 경기 화성시 용주로 136 (송산동, 용주사)
 - 지정일 : 2017. 08.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화성시 송산동 186-11번지 일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0m
 - 사업내용 : 강당 1동, 선원 3동 신축
 - 건축(연)면적 : 강당 100.98㎡, 선원1,2(규모동일) 129.60㎡, 선원3 364.80㎡
 - 구조 : 한식 목구조
 - 층수/높이 : 강당(1층/7.76m), 선원1,2,3(1층/6.425m)
 - 기타 : 자연석 석축(H=0.7~4.8m, L=212.6m), 절토량 2,068.48㎡, 성토량 128.87㎡

19.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 원용당 개축

가. 제안사항

전남 곡성군 소재 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에 원용당 개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원용당 개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 소재지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번지, 태안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번지, 태안사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원용당 개축
 - 건축(연)면적 : 72.0㎡
 - 구조 : 한식 목구조 5량가구(정면 4칸, 측면 2칸)
 - 층수/높이 : 1층/6.14m
 - 기타 :
 - “가”형 자연석 석축(평균 H=1.32m, L=37.2m)

- “나”형 자연석 석축(H=0.92m, L=11.0m)
 - 자연석 계단(W=2.4m) 2개소
- ※ 기존 원용당 규모(60m²) : 9.67m × 6.2m
구조 : 조적조 벽체, 샌드위치판넬 지붕

20.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주변 템플스테이 건물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주변 템플스테이 건물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템플스테이 건물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기림로 437-17, 기림사(호암리)
 - 지정일 : 1985.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3, 415, 산1-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70m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건물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139.5㎡
 - 구조/지붕 : 한식목구조 / 맞배지붕
 - 동수 : 1개동
 - 층수/최고높이 : 1층 / 7.12m

21. 안동 봉정사 대응전 주변 영산암 진입로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보 「안동 봉정사 대응전」 주변 영산암 진입로 정비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영산암 진입로 정비 공사를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안동 봉정사 대응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태장리)
 - 지정일 : 2009. 06. 3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영산암 진입로 정비공사
 - 사업규모 : L=248.5m, B=3.0m
 - 돌수로설치(0.5*0.5~0.7) : L=179.0m
 - 흙콘크리트포장 : A=759m²

22.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대응보전 건립(3차)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소재 보물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에 대응보전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대응보전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 ※ ‘11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10.20.)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와 동수 등의 축소 조정이 필요함.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11.16.) : 부결
 - 건물의 위치와 규모 부적정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08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1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대응보전 건립

구분	1차 (‘11.10.20 / 부결)				2차 (‘17.11.16 /부결)	금차	비고
	정천궁	종각	사천왕문	법당	정법궁 (대응전)	대응보전	
건축 면적	35.19m ²	12.96m ²	46.98m ²	110.88m ²	110.88m ²	77.76m ²	
구조	한식 목구조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좌동	
층수	지상1층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높이	8.860m	7.770m	7.571m	9.492m	11.186m	9.54m	
특이 사항	용화전(23.14m ²), 정법궁(53.9m ²) 철거				정법궁 철거	좌동	

23.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교량 설치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보물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교량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33번지
 - 지정일 : 1968. 12. 1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58-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0m
 - 사업내용 : 교량 설치(보행자 전용)
 - 길이 / 폭 : 27m / 2.1m
 - 구조 / 마감 : 철골조 / 목재
- ※ 관련 사업 :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생태탐방로 조성 4.4km(교량 설치 포함)
 - 탐방데크, 스카이 워크, 조망쉼터, 야생화 및 억새 식재 등

24.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제안사항

경기 안양시 소재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국가지정문화재 보호 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인접 토지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고자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9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0차 회의(2019.10.17.)에서 원안가결 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019.10.28.~2019.11.26.)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4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 기존 보호구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4번지 외 1필지 1,017.6㎡
 - 추가 보호구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17번지 122㎡

소재지	기존 보호구역			추가지정 보호구역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필지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필지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필지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	16,186	1,017.6	1	122	122	3	16,308	1,139.6

2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

가. 제안사항

보물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등 13건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신규 및 조정(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449호, '17.12.18) 개정 등을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 대상 문화재 : 보물 제167호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등 13건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비고
				지형도면	범례표	
신규		1건				붙임1
1	보물	1828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신규	신규	
조정		12건				붙임2
1	보물	167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2	보물	316	완주 화암사 극락전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662	완주 화암사 우화루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비고
				지형도면	범례표	
3	보물	459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3,4구역 층수 제한 삭제 공통사항 조정	
4	보물	468	밀양 승진리 삼층석탑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5	보물	609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3,구역 층수 제한 삭제 공통사항 조정	
6	보물	610	영양 현리 삼층석탑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3,구역 층수 제한 삭제 공통사항 조정	
7	보물	914	정읍 보화리 석조이불입상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8	보물	1122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9	보물	1338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10	보물	1771	기장 장안사 대웅전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11	보물	1808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12	보물	1831	의성 대곡사 대웅전	변경없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 층수 제한 삭제 공통사항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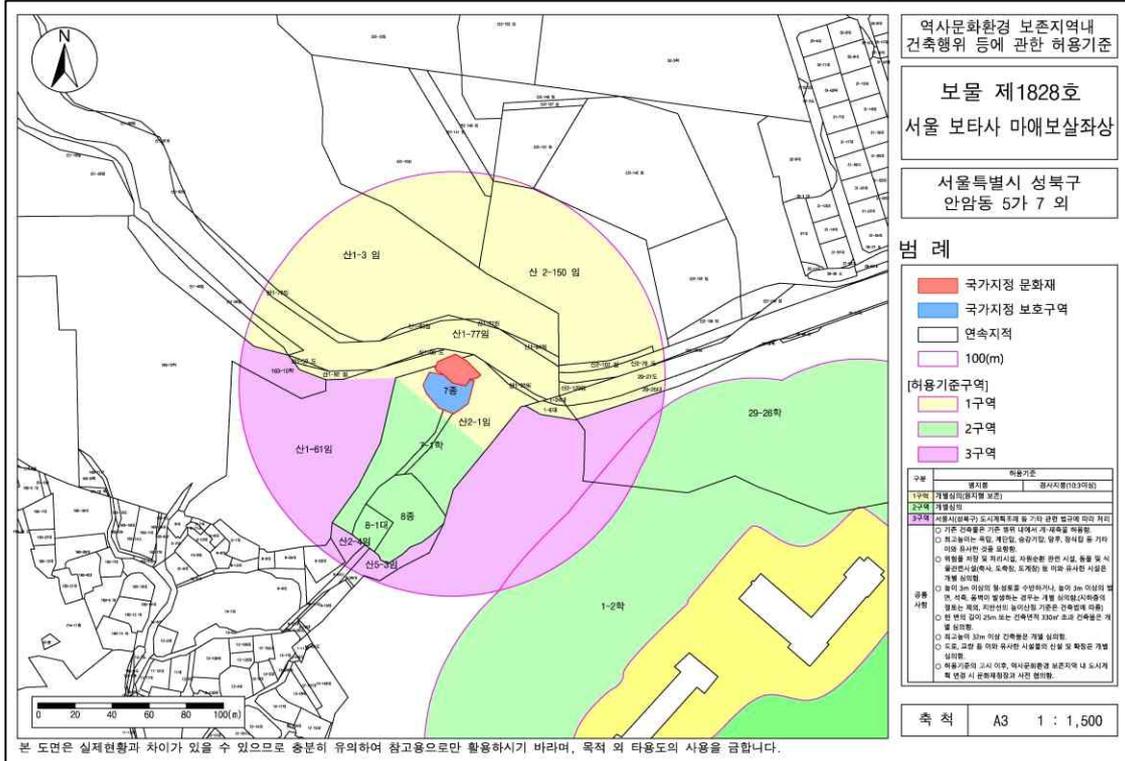
[붙임 1] 허용기준 신규 1건

[붙임 2] 허용기준 조정 12건

[붙임1] 허용기준 신규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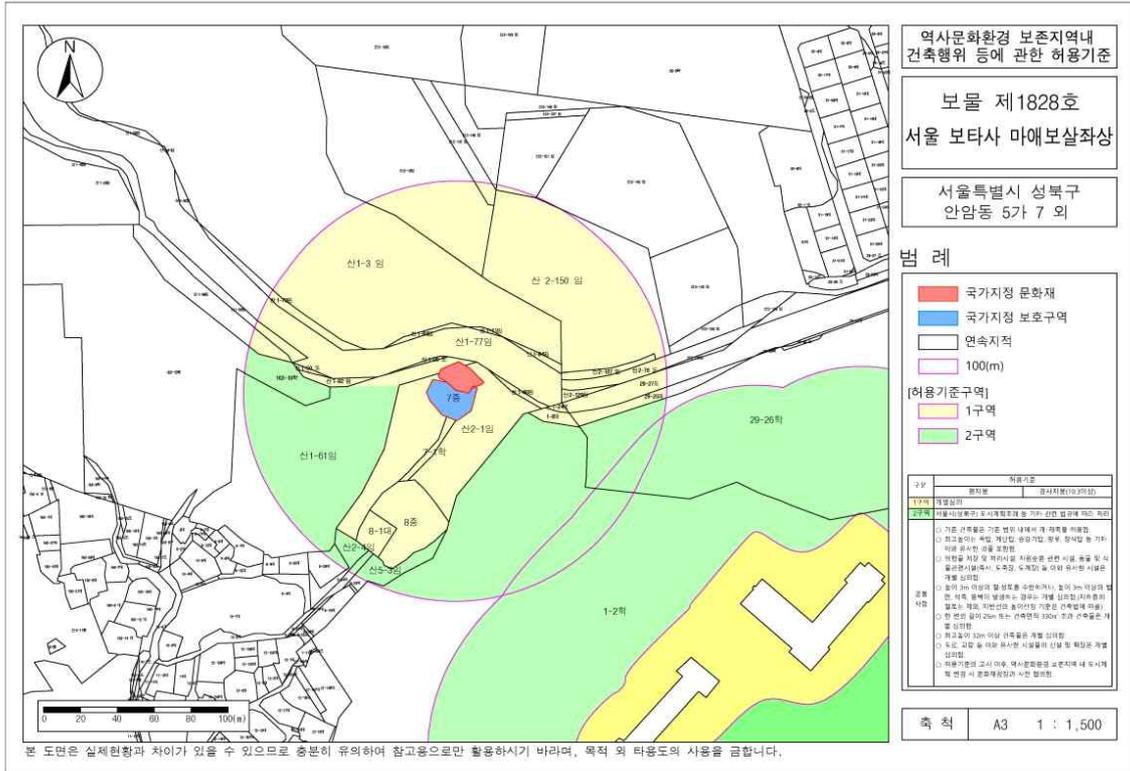
▣ 보물 제1828호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서울특별시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형	경사지형
제1구역	개별심의 (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심의	
제3구역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문화재청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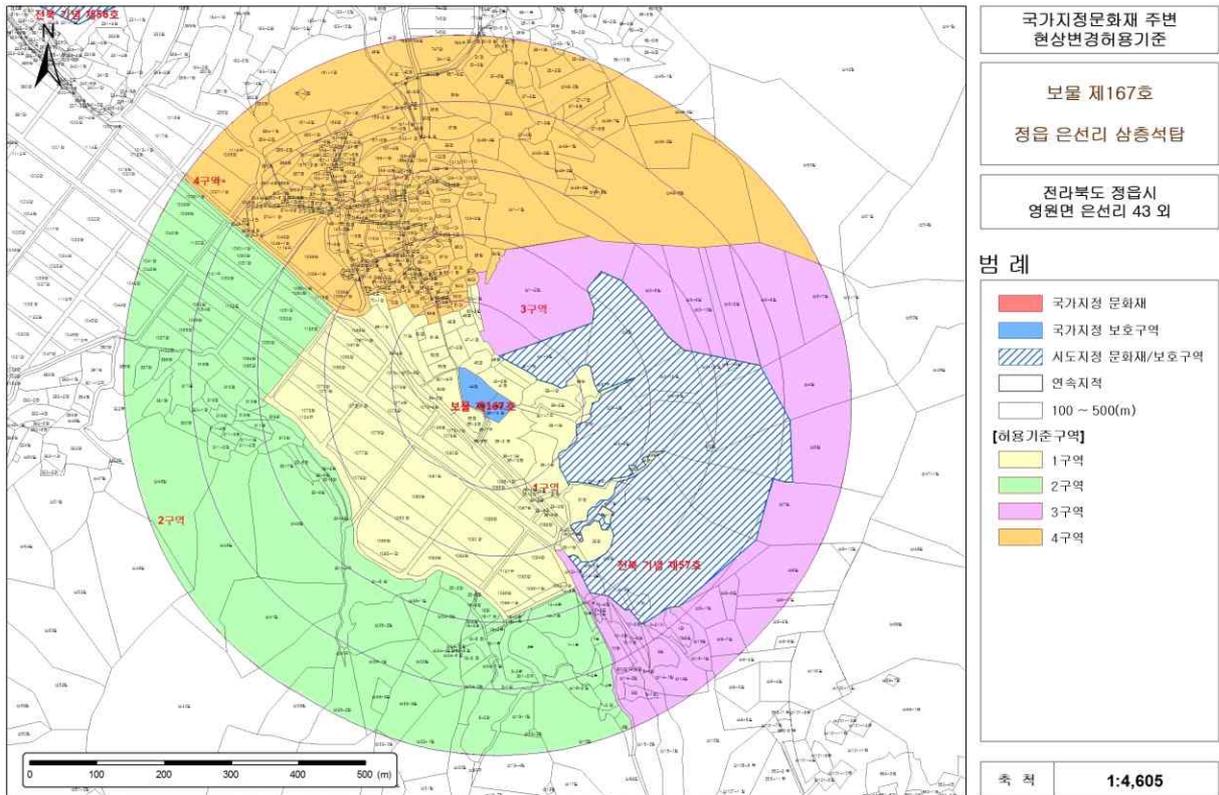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2] 허용기준 조정 12건

▣ 보물 제167호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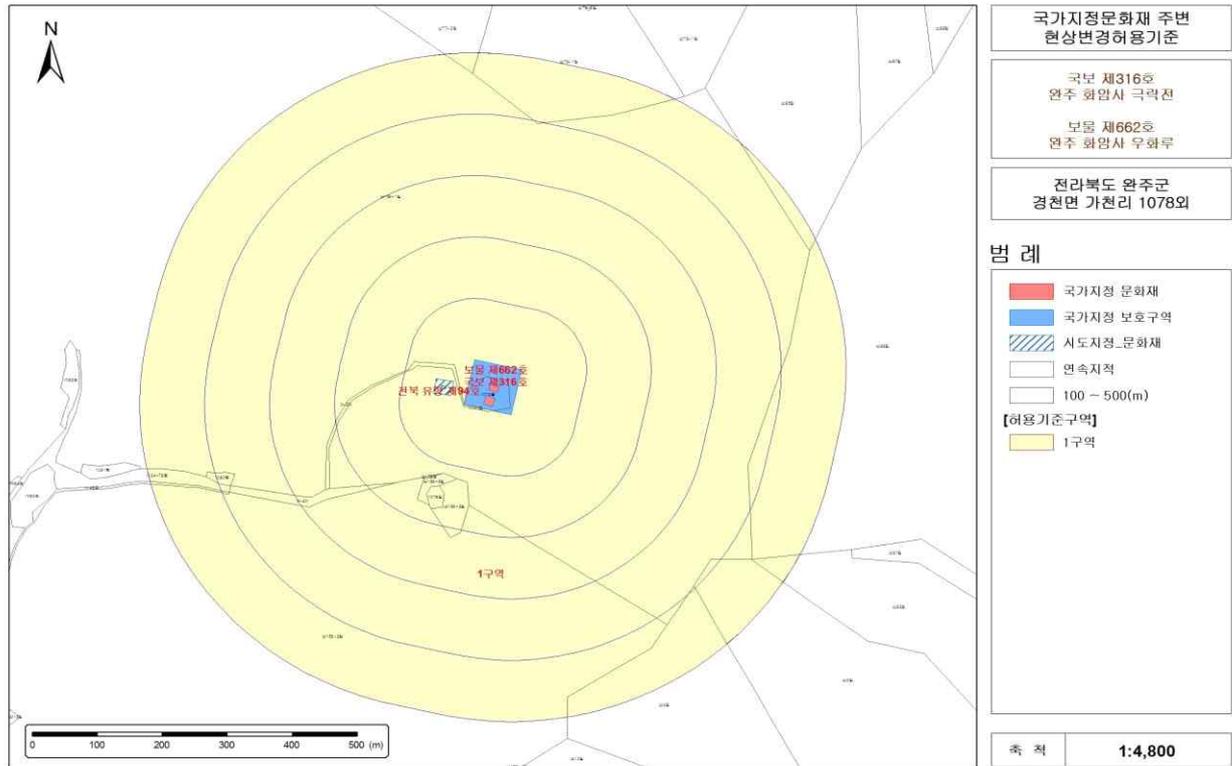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316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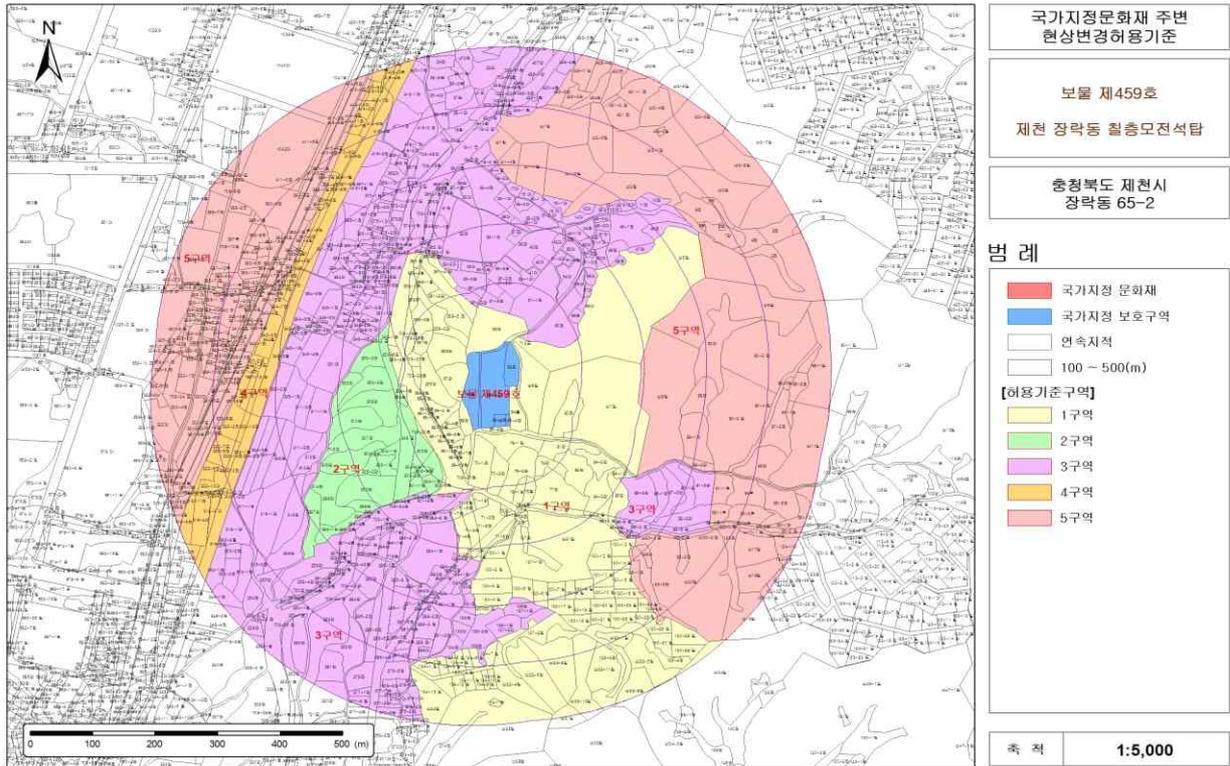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59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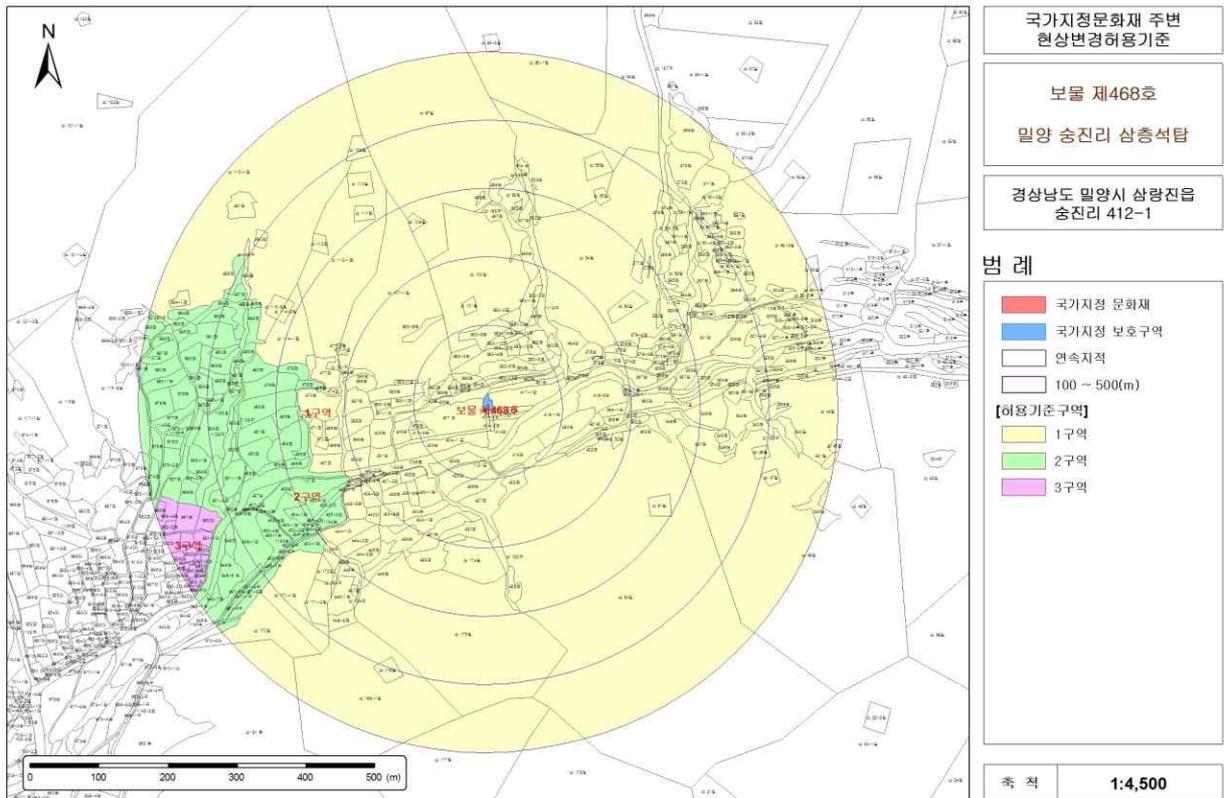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면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제3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면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68호 “밀양 송진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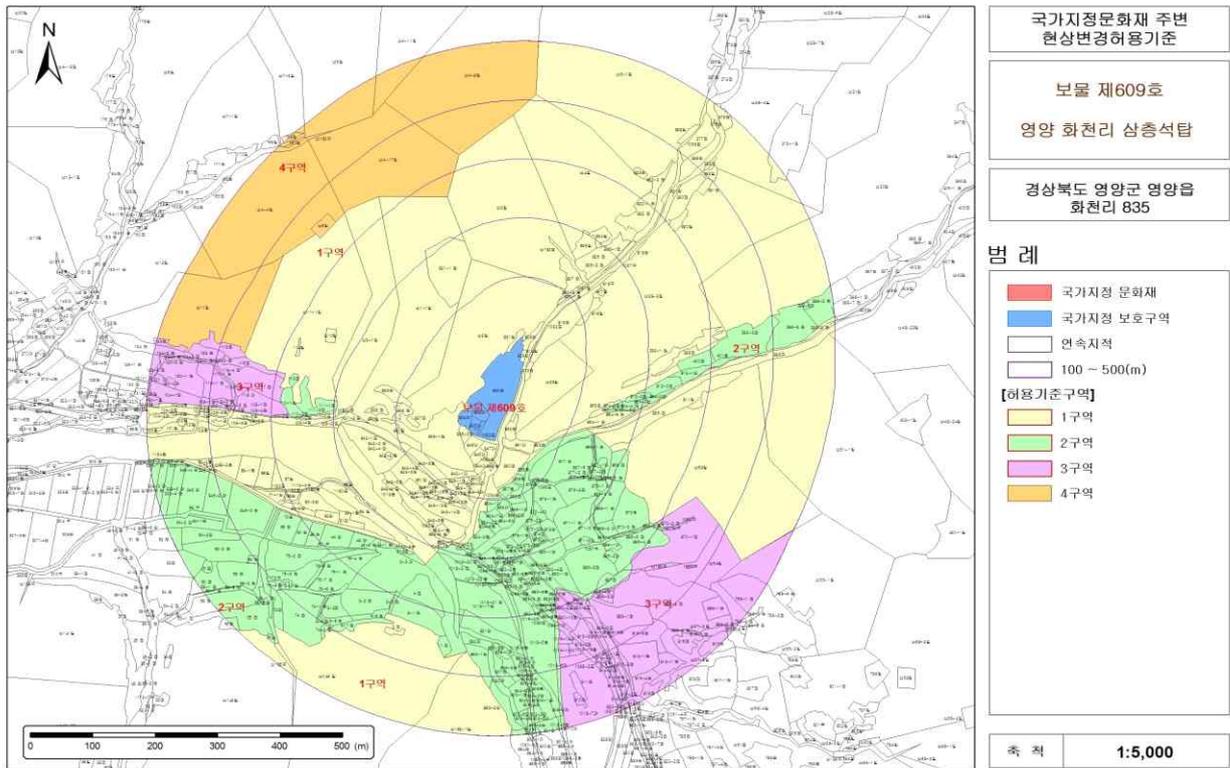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609호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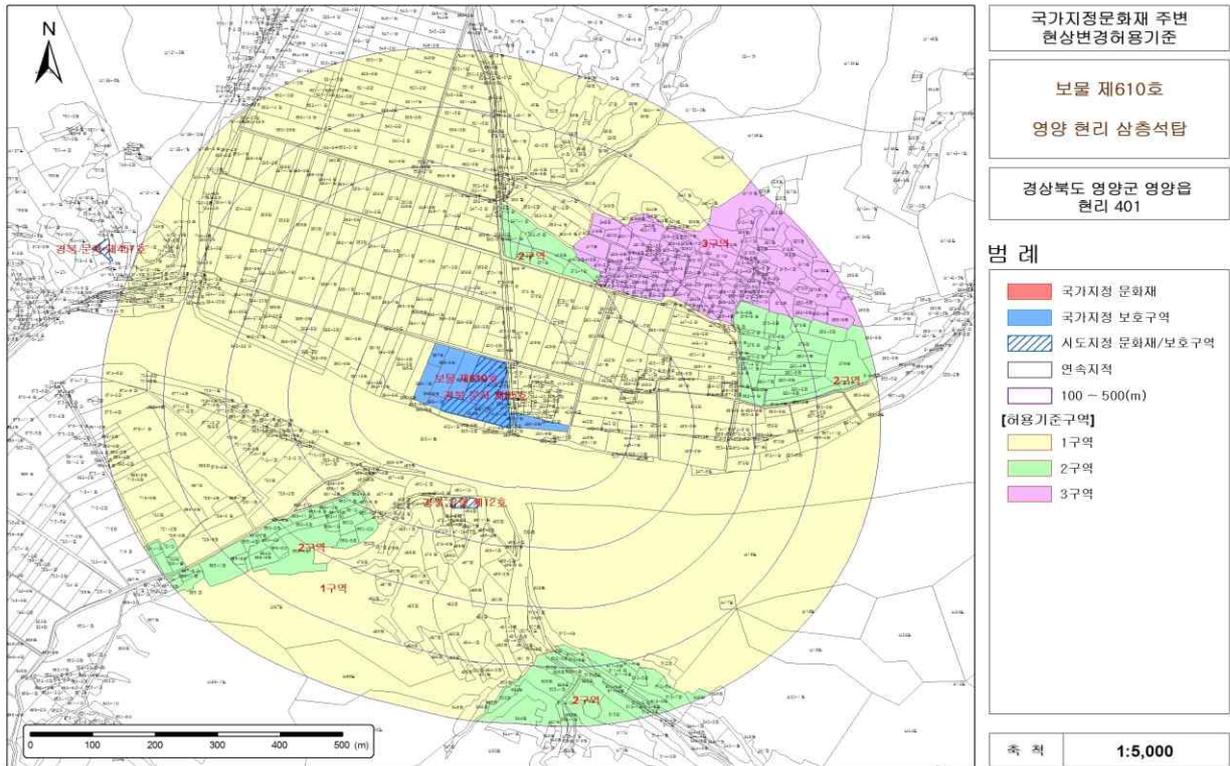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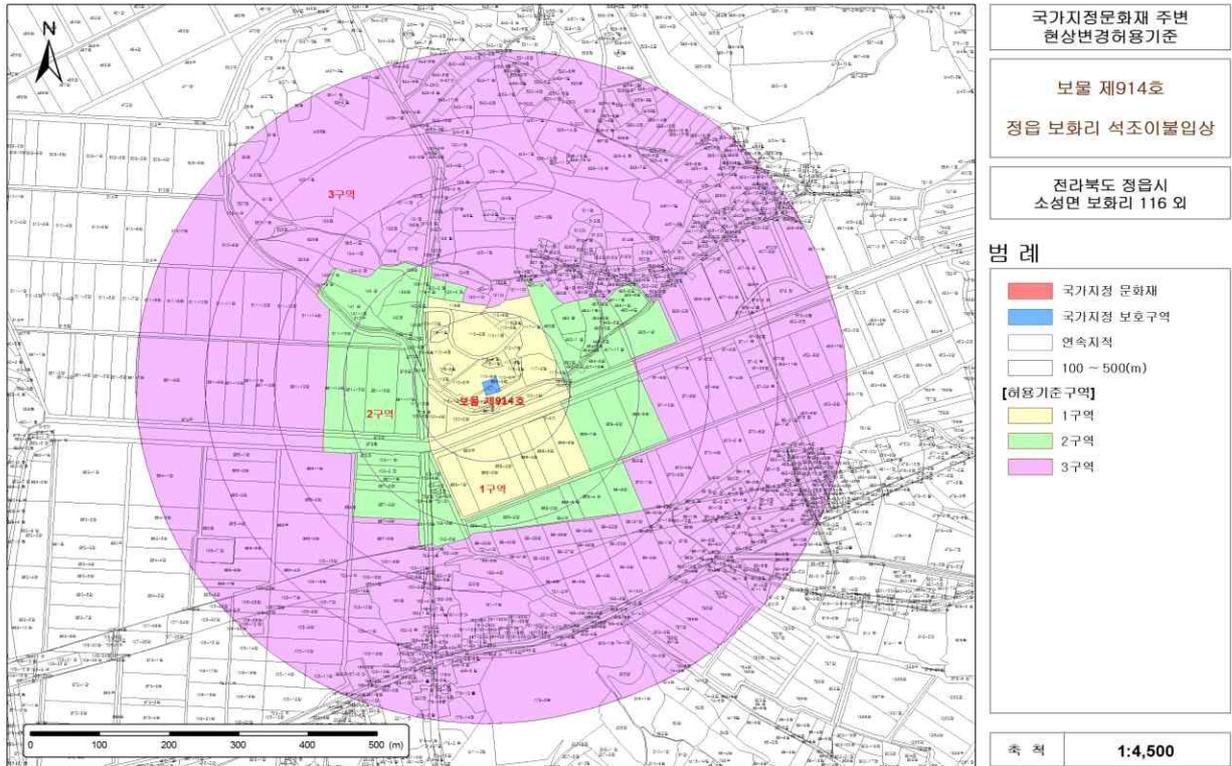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p>○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보물 제914호 “정읍 보화리 석조이불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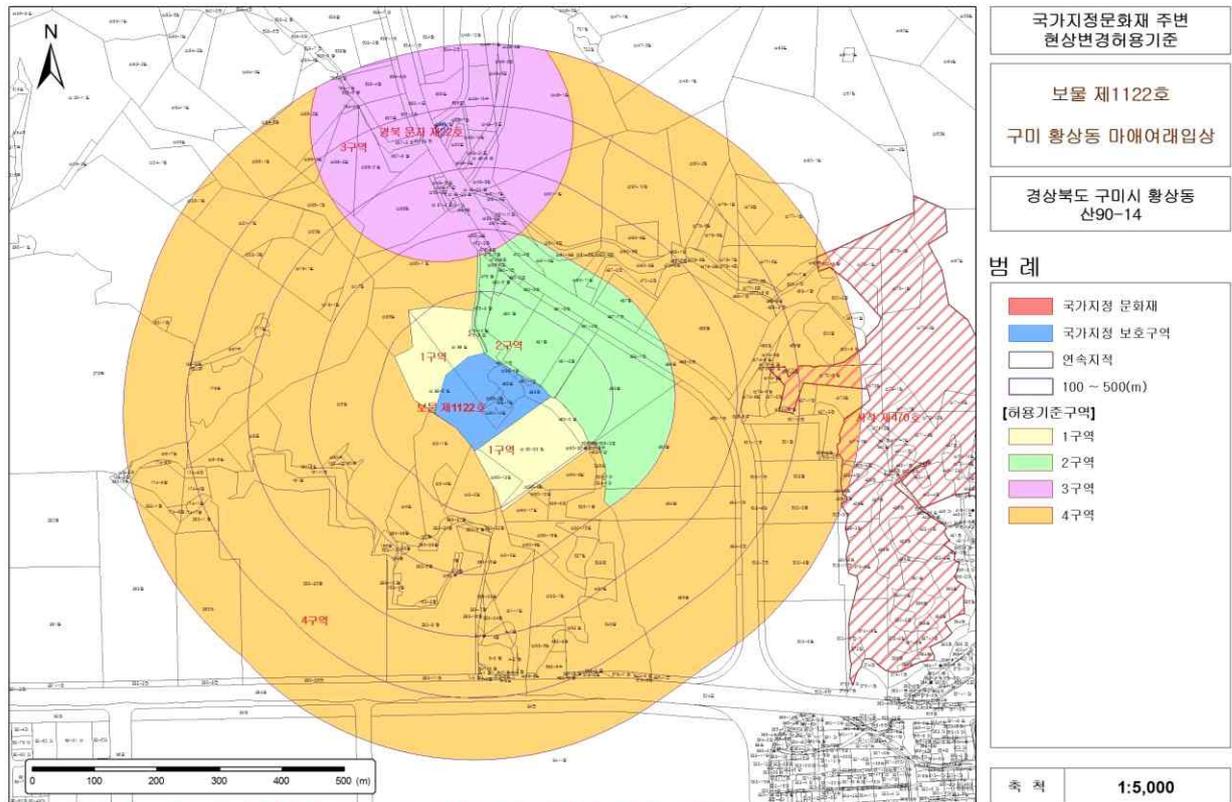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입회)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입회)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122호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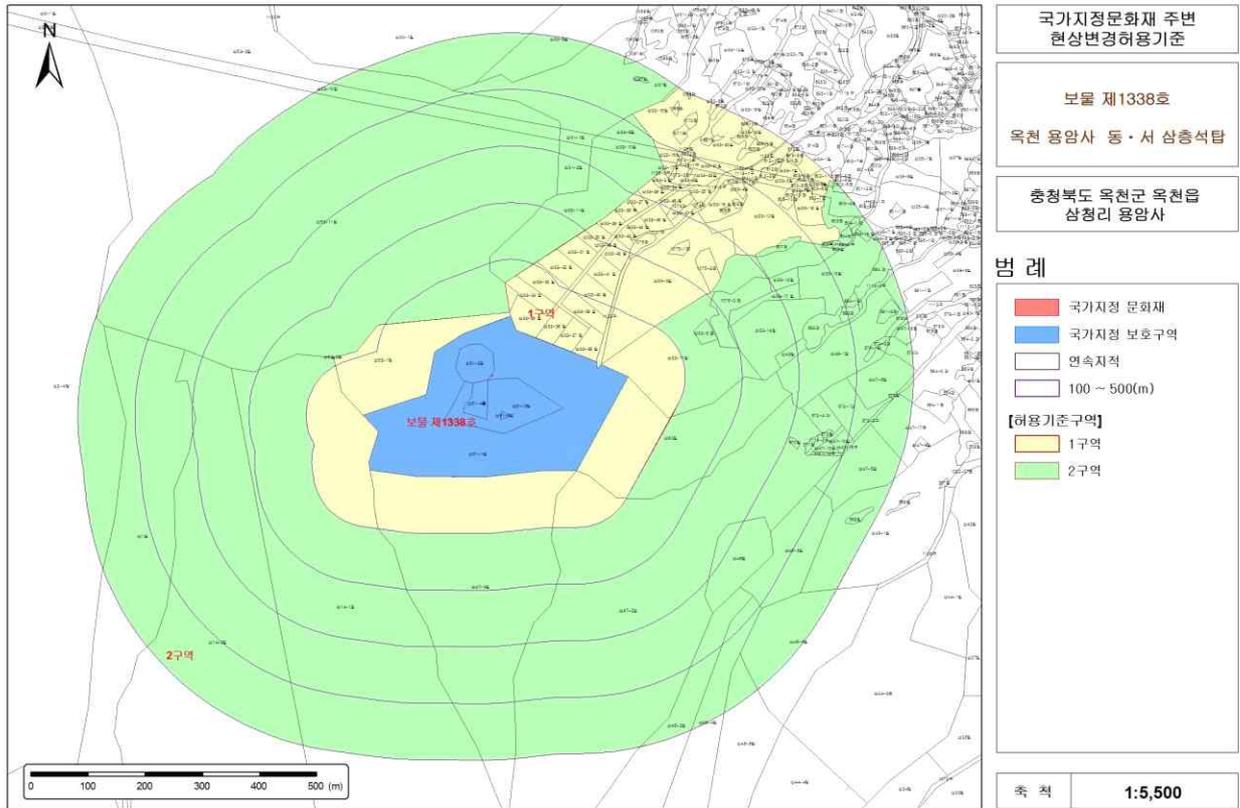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호 「구미 척화비」 현상변경허용기준 및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호 「구미 척화비」 현상변경허용기준 및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이하 사항은 전체 구역에 해당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338호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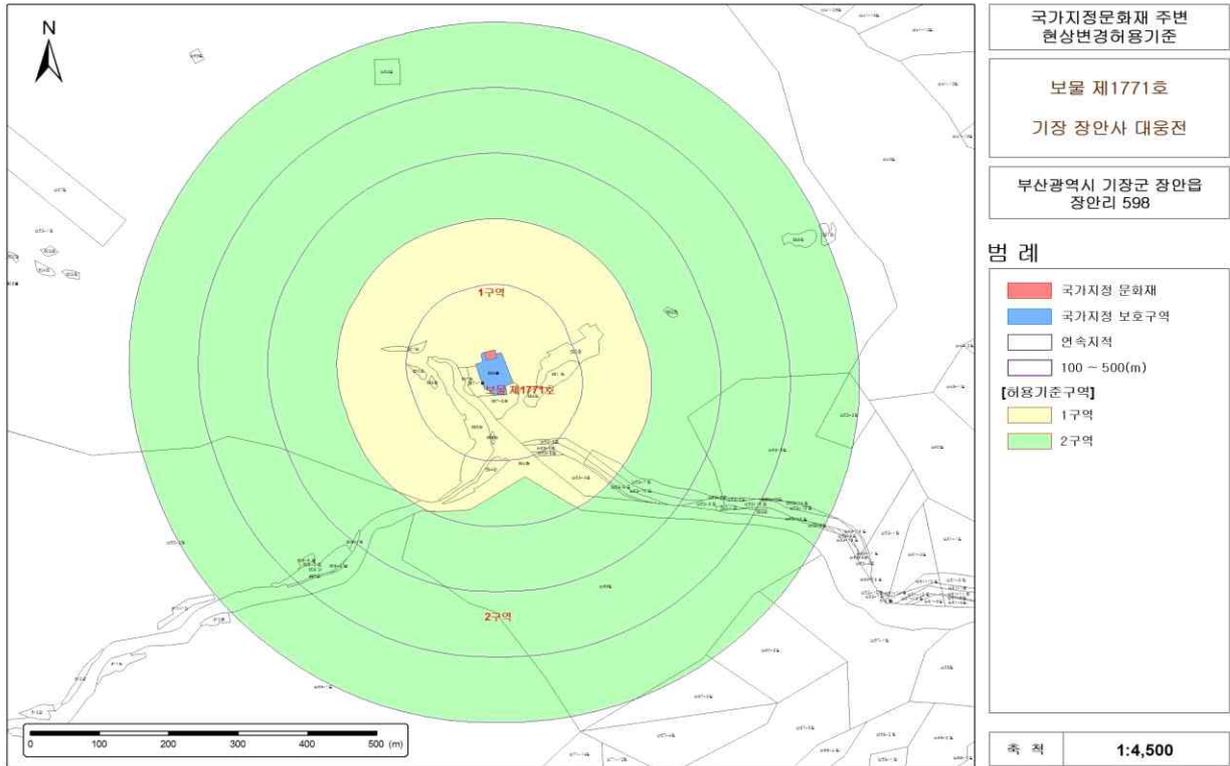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용암사 경내는 제외)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용암사 경내는 제외)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771호 “기장 장안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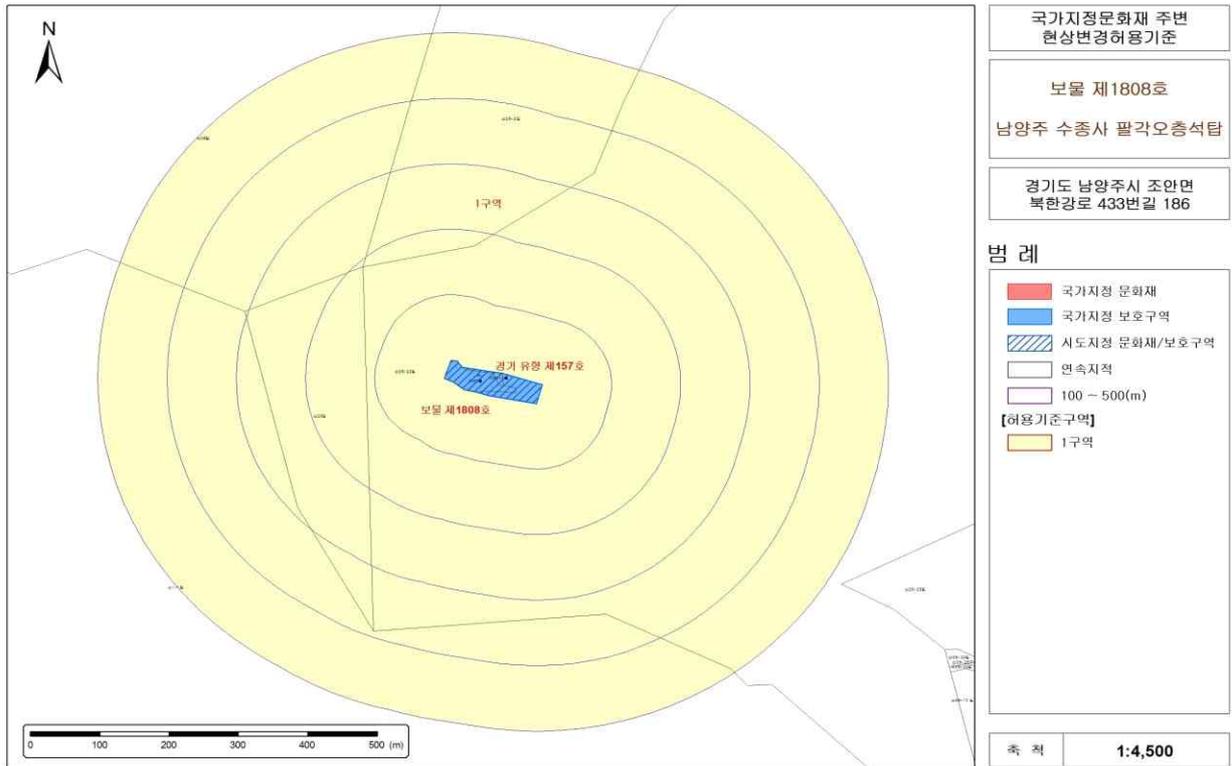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808호 “남양주 수증사 팔각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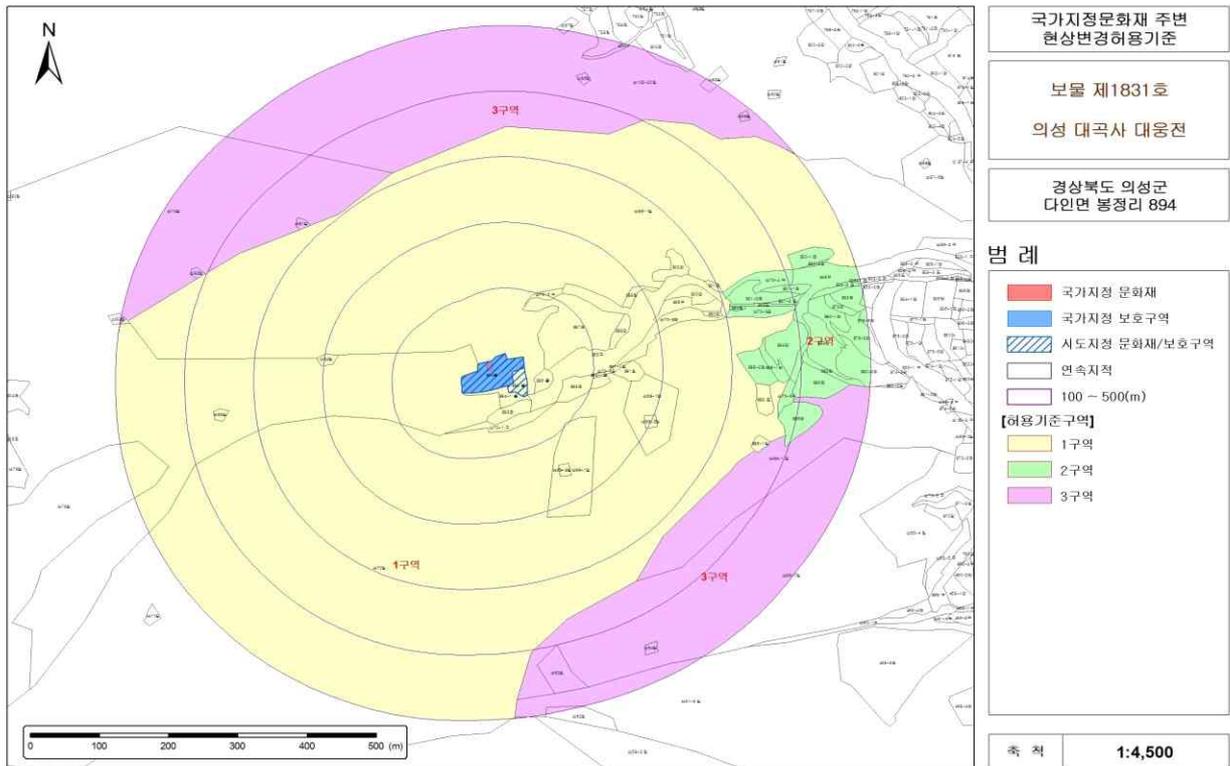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보물 제1831호 “의성 대곡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13-026

26. 창녕 인양사 조성비 주변정비사업 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녕 인양사 조성비」 주변정비사업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9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녕 인양사 조성비」 주변정비사업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창녕 인양사 조성비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2번지 일원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인양사 조성비 주변 정비(공원조성)를 실시한다.
- 사업내용 : 인양사 조성비 주변정비사업
 - 토목공사 : 대지정비, 탐방로, 주차장, 배수로 정비
 - 건축공사 : 기존 보호각(5.9m²) 철거 및 신축(9.0m²)
 - 조경공사 : 전통수목 및 잔디식재, 파라솔 1개소, 벤치 10개소 등
 - 주변정비공사 : 진입로 데크설치, 노후웬스정비

27.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건립 검토(2차 재검토)

가. 제안사항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건립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7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건립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8.22) : 부결
 - 발굴결과와 설계안의 연관성 미흡
 - 보호각의 기능에 충실토록 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11.21) : 보류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조, 기법, 양식 등에 대한 수정·보완 후 재검토 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산124-11
 - 지정일 : 1963. 01. 21.
- (2) 사업내용 : 보호각 건립
 - 사업지침 : 2015년도 사업으로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각을 건립한다.
 - 주요내용 : 보호각 건립

구분	1차 (‘19.08.22. / 부결)	2차 (‘19.11.21. / 보류)	금차
건축면적	98.01m ²	51.84m ²	좌동

구분	1차 (‘19.08.22. / 부결)	2차 (‘19.11.21. / 보류)	금차
주구조	한식목구조	좌동	좌동
층수/최고높이	중층/12.47m	중층/13.95m	1안 : 중층/14.3m 2안 : 3층/16.5m
지붕	팔작지붕	모임지붕	좌동
기타	2단기단 4,800mm 주칸	1단기단 3,600mm 주칸 상륜 설치	좌동

28. 여주 신륵사 설법당 건립 검토(변경 4차)

가. 제안사항

‘1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 여주시 소재 신륵사 내 설법당 건립 계획 변경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설법당 건립에 대한 설계 변경(안)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8.04.19) : 보류
- 규모 축소 후 재검토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8.05.17) : 원안가결
- ※ ‘18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 검토결과(2018.12.20) : 부결
- 역사문화 환경 저해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2차) 검토결과(2019.01.17) : 부결
- 역사문화 환경 저해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변경(3차) 검토결과(2019.02.17) : 조건부가결
- 전면석축선 후퇴 및 지하층 최상부가 지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레벨을 수정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여주 신륵사 조사당
 - 소재지 : 경기 여주시 천송동 282, 신륵사
 - 지정일 : 1963. 01. 21.
- (2) 주요내용
 - 사업명 : 여주 신륵사 조사당 설법당 건립 실시설계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 위치에 적정규모로 설법당 건립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설계내용 : 설법당 건립

구분	기존안 (2018.05.17.)	변경 1차 (‘18.12월/부결)	변경 2차 (‘19.1월 / 부결)	변경 3차 (‘19.2월 / 조건부가결)	금차
위치	불이문 좌측	범종각 좌측	좌동	좌동	좌동
면적	259.37㎡	336.52㎡	238.32㎡	294.48㎡	316.80㎡
층수	지상1층	지하1층	지하1층,지상1층	지하1층	좌동
최고 높이	7.95m	4.9m	8.9m	5m	4.1m
양식	초익공, 전통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철근 콘크리트조	좌동	좌동	좌동

※ 변경사유 : 홍수관리구역 침범으로 인한 건축위치 후퇴 및 평면 부분 변경

29. 공주 마곡사 대응보전 주변 금어원 건립 검토

가. 제안사항

‘19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공주 마곡사 대응보전」 주변 금어원 건립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금어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공주 마곡사 대응보전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마곡사(운암리)
 - 지정일 : 1984. 11. 30.
-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6번지 외 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00m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곡사 금어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를 실시한다.
 - 주요내용 : 금어원 건립
 - 대지면적 : 7,396㎡
 - 건축(연)면적 : 1,448.77㎡(1,992.40㎡)
 - 최고높이 : 17.5m

구 분	1동	2동	3동	비 고
연면적	1,632.56m ²	178.61m ²	181.23m ²	
층수	지상 3층	지상 1층	지상 1층	
구조	지상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3층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용도	대형작업실,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등	조형작업실	소형작업실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13-030

30. 창경궁 명정문 보수공사 추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창경궁」 내 보물 「창경궁 명정문 및 행각」 보수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창경궁 명정문 보수공사 추진 중 연목이상 해체 한 결과 추녀 3분의 구조적 파괴현상, 종보 보머리 파손 및 평방 갈래 등 확인되어, 구조적인 보수를 위하여 평방이상 해체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보고결과(2019.09.19.) : 원안접수

다. 보고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창경궁관리소장)
- (2) 대상문화재 : 보물 「창경궁 명정문 및 행각」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 지정일 : 1963. 01. 21.
- (3)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창경궁(사적 제123호) 내 명정문
 - 주요 사업내용
 - 목공사 : 기둥 12개소 드잡이, 일부 평방해체, 공포이상 해체, 일부 추녀 및 연목, 선자연 교체, 포작(살미, 소로 등) 일부 교체 등
 - 지붕공사 : 기와해체 후 재설치(신재보충 70% 이상), 일부 장식기와 교체
 - 미장공사 : 양성바름, 양토회벽 및 당골회벽 바르기 등

- 단청공사 : 교체부재 고색단청
- 사업기간 : 2019. 4.17. ~ 2020.10.27.(예정)
- 사업예산 : 1,500,000천원(예산)

3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농막 설치(변경허가) 등 허가신청 20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0건	원안가결 17건 조건부가결 1건 부결 2건	
울주 천전리 각석	울산 울주 (○○○)	<input type="checkbox"/> 농막 설치(변경허가) <input type="checkbox"/> 위치 - (당초)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37-2 - (변경)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36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00m 이격)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 농막설치 - 규모 : 가로4.5m, 세로4.3m, 높이2.4m - 구조 : 샌드위치판넬	원안가결	'19.11.2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경북 구미 (○○○)	<input type="checkbox"/> 축사 양성화 및 증축 ○ 위치 :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776-1, 776-2, 777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20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 1,729.52㎡(1,669.57㎡) · 주1동 : 총 649㎡(기존 399㎡, 양성화 250㎡), 지상1층(높이6.2m) · 주2동 : 총 820.57㎡(기존 399㎡, 양성화 421.57㎡), 지상1층(높이6.2m) · 부1동(증축) : 200㎡, 지상1층(높이6.2m) - 구조 : 강파이프구조	원안가결	'19.11.25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경북 구미 (○○○)	<input type="checkbox"/> 축사 양성화 및 증축 ○ 위치 :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993-1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60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 662.36㎡ · 주1동 : 총662.36㎡(기존 399.36㎡, 양성화 263㎡), 지상1층(높이6.0m), 철거 21.015㎡ - 구조 : 강파이프구조	원안가결	'19.11.25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경북 구미 (○○○)	<input type="checkbox"/> 축사 양성화 및 증축 ○ 위치 :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994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60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 736.41㎡ · 가동 : 총327.82㎡(기존 246.42㎡, 양성화 81.4㎡), 지상1층(높이6.15m) · 나동 : 총327.05㎡(기존 164.28㎡, 양성화 162.77㎡), 지상1층(높이6.15m) · 다동 : 총81.54㎡(기존 195.92㎡), 지상1층 (높이6.15m), 철거114.38㎡ - 구조 : 강파이프구조	원안가결	'19.11.2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여수 진남관	전남 여수 (○○○)	<input type="checkbox"/> 진남관 입구 무인계측기 설치 ○ 위치 : 여수시 군자동 480번지 일원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무인계측기 설치 1식 - 무인계측기 높이(H)=1.5m, 길이(L)=2m	원안가결	'19.11.25
구미 대둔사 대웅전	경북 구미 (○○○)	<input type="checkbox"/> 도로 선형 개량 공사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산194번지 * 제1,2구역(보호구역에서 102m 이격) ○ 내용 - 총 사업양 : B=0~4.7m, L=161.0m(3개소) - 1공구 · 기존도로폭(B=11.5~6.3m), 도로확포장 (B=0~4.7m) · 확장후도로폭(B=11.5~11.0m, L=65.0m) · 사면축대 : 조경석메쌓기(H=0.3~2.0m, L=43.0m) - 2공구 · 기존도로폭(B=10.0~5.0m), 도로확포장 (B=0~3.7m) · 확장후도로폭(B=10.0~8.7m, L=50.0m) · V형측구 헐기 및 복구(0.5*0.8), L=23.0m · 사면축대 : 조경석메쌓기(H=0.3~0.9m, L=23.0m) - 3공구 · 기존도로폭(B=7.5~4.0m), 도로확포장 (B=0~1.0m, L=46.0m) · 확장후도로폭(B=7.5~5.0m, L=46.0m) · 사면축대 : 깎잡석메쌓기(H=1.0~3.0m, L=54.0m)	원안가결	'19.11.2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경남 의령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기간연장) ○ 위치 : 의령군 의령읍 하리 80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및 차고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70.9㎡(70.5㎡) - 층수/ 높이 : 지상1층/ 5.2m - 구조 : 일반목구조 - 마감 : 아스팔트싱글, 세라믹 외장타일 * 허가기간(2018-06-07 부터 2019-09-30) 만료로 재신청, 허가조건(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임회조사)	원안가결	'19.11.25
경주 서악동 귀부	경북 경주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주시 서악동 962-1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7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124.78㎡(99.28㎡) - 규모 : 지상 1층, 높이 7.2m - 구조 : 철근콘크리트/한식기와	원안가결	'19.12.02
경주 석굴암 삼층석탑	경북 경주 (○○○)	<input type="checkbox"/> 통신용 증계기 강관주 설치 ○ 위치 : 경주시 진현동 산89-1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통신용 강관주 설치 : A=9㎡, H=10m - 강관주 지중깊이 : 3m	원안가결	'19.12.02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경북 경산 (○○○)	<input type="checkbox"/> 임도개설, 숲가꾸기 등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산55-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50m 이격) ○ 사업내용 - 임도개설 : L=450m, B=2~3m (장비진입용 임시도로) - 숲가꾸기 : 11ha 중 335㎡ 속아내기(잡목 제거) - 상수리나무 골라베기 : 1ha 중 35㎡ 골라베기 (30%골라베기) - 표고버섯 재배 : 1ha - 산림경영관리사 : 컨테이너(3×6m)	원안가결	'19.12.02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전남 구례 (○○○)	<input type="checkbox"/> 2019 관광자원화사업(피아골 탐방로 정비)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69번지 일원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330m 이격) ○ 사업내용 : 탐방로 정비 180m - 흙콘크리트포장(T200) L=71.5m - 데크로드B(54경간) L=108m, 지주고정용 기둥(L650) 110개소 - 돌단C(H1.2) 1개소, 돌단D(H1.2) L=33m 원주목올타리 22경간(L=33m) (건축면적 1,192.1㎡) 등	원안가결	'19.12.09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경남 산청 (○○○)	<input type="checkbox"/> 상수도관 매설공사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산104-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63m 이격) ○ 사업내용 : 상수도관 매설공사 - 규격 : D200mm / 길이 1,100m - 터파기 단면 1,300mm×1,300mm	원안가결	'19.12.0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경남 산청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운리 산 45-22번지 내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6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및 차고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20.78㎡(116.28㎡) - 층수/높이 : 1층 / 6.18m - 구조 : 경량철골조 - 석축 : 자연석 쌓기 높이 0.5~3m	원안가결	'19.12.09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 상	경기 이천 (○○○)	<input type="checkbox"/>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설치 및 부지 조성(변경허가) ○ 위치 : 이천시 마장면 목리 437-6, 437-7번지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476.5m 이격) ○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당초</th> <th style="width: 50%;">변경</th> </tr> </thead> <tbody> <tr> <td>대지면적 : 4,062㎡</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좌동</td> </tr> <tr> <td>건축면적 : 409.2㎡</td> </tr> <tr> <td>규모 : 3동 1층</td> </tr> <tr> <td>최고높이 : 9.6m</td> </tr> </tbody> </table> ※ 변경사항 : 진입도로 위치 및 건물 배치 이동 등	당초	변경	대지면적 : 4,062㎡	좌동	건축면적 : 409.2㎡	규모 : 3동 1층	최고높이 : 9.6m	원안가결	'19.12.09
당초	변경										
대지면적 : 4,062㎡	좌동										
건축면적 : 409.2㎡											
규모 : 3동 1층											
최고높이 : 9.6m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	전남 구례 (○○○)	<input type="checkbox"/> 금선암 요사채 건립(변경허가 2차)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22 전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20m 이격) ○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당초</th> <th style="width: 50%;">변경</th> </tr> </thead> <tbody> <tr> <td>건축(연)면적 : 9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좌동</td> </tr> <tr> <td>지붕형태 : 팔작지붕</td> </tr> <tr> <td>층수/최고높이 : 1층/6.62m</td> </tr> </tbody> </table> ※ 변경사항 : 위치변경(동남쪽 9.1m, 21.63° 남향이동)	당초	변경	건축(연)면적 : 90㎡	좌동	지붕형태 : 팔작지붕	층수/최고높이 : 1층/6.62m	원안가결	'19.12.09	
당초	변경										
건축(연)면적 : 90㎡	좌동										
지붕형태 : 팔작지붕											
층수/최고높이 : 1층/6.62m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부산 범어사 조계문	부산 금정 (○○○)	<input type="checkbox"/> 비림정비사업(국고보조 검토사항 변경) ○ 위치 : 금정구 범어사로 250 ○ 사업내용 : 비림정비사업 내용 변경 - 변경내용 : 당초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된 설계안에서 석축의 선형 및 절·성토 내용 변경, 자연석 배수로를 추가 - 변경사유 : 비석 종류별 영역의 면적 변화 및 현장 공사실정에 따른 변경	원안가결	'19.12.09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상주 (○○○)	<input type="checkbox"/>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155-7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450m 이격) ○ 사업내용 - 설치면적 : 110m ² (모듈면적 : 102.82m ²) - 발전방식 : 고정식(경사고정형) - 설치방법 : 건물위 - 모듈크기 : 2,080*1,030*35mm - 태양광모듈 : 415W*48매	원안가결	'19.12.12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경북 칠곡 (○○○)	<input type="checkbox"/> 농막 설치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88-3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10m 이격) ○ 내용 - 건축면적 : 18m ² - 높이 : 2.5m - 구조 :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	조건부가결 (향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시 문화재 보호법 관련 재허가를 득할 것)	'19.12.02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충남 공주 (○○○)	<input type="checkbox"/> 기존 계단 철거 후 데크 설치 ○ 위치 :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산72-3, 568-1, 568-6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24m 이격)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87㎡ - 규모 : B=1.8m, L=39.6m - 난간보 높이 1.2m, 폭 1.8m - 난간높이(기동평균 0.6 + 난간보 1.2) 1.8m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19.11.25
충주 역정사지 대지국사탑비	충북 충주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및 부속동(창고) 신축 ○ 위치 :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346-2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50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062㎡ - 건축면적 : 단독주택 93.06㎡, 창고 64.29㎡ - 층수/최고높이 : 단독주택 1층/5.3m 창고 1층/4.6m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19.12.09